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습기살균제 건강모니터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을 증원하고, 건강피해 원인규명을 위해 환경역학조사 인력 1명(연구사 1)을 증원하며, 정지궤도 환경위성 자료 활용 및 아시아 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을 증원하고, 낙동강 하류 먹는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을 증원하며,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산정·검증을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인허가의제 도입에 필요한 인력 8명(7급 8명)을 증원하며, 유역·지방환경청에 수돗물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7명(7급 7명)을 증원하고, 영산강홍수통제소에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를 신설하면서 운영을 위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낙동강·금강홍수통제소의 예보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6을 제48조의7로 하고, 제4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6(홍수통제출장소) ① 홍수통제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

여 홍수통제소장 소속하에 홍수통제출장소를 둔다.

② 홍수통제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수통제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의6(홍수통제출장소) ① 홍수통제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홍수통제소장 소속하에 홍수통제출장소를 둔다. ② 홍수통제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수통제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6 (생략)	제48조의7 (현행 제48조의6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1,840	1,865	+25
일반직 계	1,840	1,865	+2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1,810	1,835	+25
·	·	·	